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70

2020년 3월 10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16일, 김태수 의원 외 13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다. 상정일자 : 제291회 임시회 폐회중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20년 3월 10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태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과 봄에 일정 기간 동안 배출원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에서 3월까지 시장은 현행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사항들과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 기간 동안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실시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의 기간,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5조의2 신설)

○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 중 상시 운행제한의 대상, 시행시간, 단속방법,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이재효)

가. 개요

○ 작년 3월, 유래 없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7일 연속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바 있으나 이미 발생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 대상 지역, 내용 및 절차 등과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 중 상시 차량 운행제한의 대상, 시행시간, 단속방법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나. 검토의견

1)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동향

○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차별화된 사전 예방적 특별대책임.

○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 기간을 12월부터 3월까지로 설정하여 수송, 난방, 사업장 및 노출저감 등의 분야에서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및 도로 청소강화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9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핵심 9대 과제>

분야	핵심과제	시행시기
수송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20. 2. ~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19. 12. ~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20. 1. ~
난방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19. 12. ~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19. 12.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19. 12.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사용제한 확대	저공해화('20. 1.~), 사용제한('20. 12.~)
노출 저감	도로청소 강화	'19. 12. ~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19. 12. ~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상위법 개정 및 수도권 3개 시·도 합의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주요 대책 중 하나인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3개 시·도의 합의와 상위법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

○ 이에 수도권 3개 시·도는 ’20년 2월 1일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평일만 시행하고, 한시적 유예대상을 명확히 설정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 전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운행제한의 세부 내용에 합의[1]한 바 있음. 또한 「미특법」 일부개정법률안[2][3]이 ’20년 3월 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수도권 3개 시·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관련 합의사항>

운행제한 합의사항		개 정 안	수 정 안
’20.2월부터 운행제한 개시		공포일부터 시행	시행일 규정(’20.2.1.)
한시적 유예대상 설정		유예대상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 시기(’20.12.1.)	
	생계형 차량: 영업용, 화물차	영업용, 적재량 2톤 미만 화물차, 특수차	’적재량 2톤 미만’ 삭제 특수차 관련 조항 삭제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제도 시행 후 조치 신청시 신청시점부터 단속 유예	조례 공포 전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조례 공포 전’ 삭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장착불가 포함) - ’20.12월말까지 유예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제한 시행시기 별도 규정(’21.1.1)

---

1) 미세먼지 시즌제 운행제한 협의 진행상황
- 국무조정실 주관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11.12)
- 국무조정실, 환경부, 3개 시도 국장급, 과장급 회의(10.15, 10.29, 11.15)

※ 계절관리제 시행 발표 : 서울시(11.21), 환경부 등 15개 부처 합동(11.26), 경기도(11.27)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2077호)

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22422호)

3)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 현행 조례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행정기관 주차장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행정기관 건물 중 민간 부문과 함께 사용하는 복합 건물의 경우 주차장을 완전히 폐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도록 안 제5조제1항제4호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 안 제5조의2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기간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 공포·시행시기[4]를 고려한다면 금번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는 「미특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수도권 3개 시·도 합의에 의해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된 바, 이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할 것임.

일례로 서울시 등록 5등급 차량(209,639대)의 22.5%(47,100대)를 차지하는 영업용과 화물차의 운행제한 유예조치는 화물차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 경유차보다 훨씬 크다[5]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시행 효과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

4) 집행부 이송 이후 20일 이내 공포

5) 경유화물차 평균 미세먼지 배출계수는 0.455g/km으로 경유승합차 평균(0.176g/km)보다 약 3배 높음(5등급 경유차량 운행제한 PM-2.5 배출저감 효과(2019, 서울시))

또한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중인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제도의 유예 대상과 기간 등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론요지 : 없 음

7. 수정안 요지

○ 변경된 수도권 3개 시도의 합의 사항과 「미특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행제한 유예 대상을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와 동일하게 설정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70

제안년월일 : 2020년 3월 10일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변경된 수도권 3개 시도의 합의 사항과 「미특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행제한 유예 대상을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2. 주요 골자

○ 「미특법」 개정에 따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2, 제8조, 제10조, 제12조)

○ 공해차량 운행제한의 유예 대상 설정(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생 략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제2호 중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을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로 한다.

안 제5조의2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로 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은 특별법 시행령”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행제한의”를 “운행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하며,”로 한다.

안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안 제12조제2항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4. 시장이 정한 방법·절차 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른다. 1. (생 략) 2.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3. (생 략) 4.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5.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3. (현행과 같음) 4. ---------- 폐쇄 또는 이용제한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 ---------- ---------- ---------- ---------- ----------. ---------- ---------- ---------- ---------- ---. 1. (개정안과 같음) 2.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5. ~ 6.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제1항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	제5조의2(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민 등에게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6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을 말한다.	**제6조(운행제한 대상지역)**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해차량 ----------.	**제6조(운행제한 대상지역)** (개정안과 같음)
제7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제1항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생 략)	**제7조(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을 준용한다. 〈신 설〉	**제8조(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운행제한 ---------- 특별법 제18조제4항 단서조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은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다. ②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의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등)** 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 ②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하며,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 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	**제9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	**제9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개정안과 같음)

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생 략)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5조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시행령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의2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을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대기관리권역외 등록 자동차 ②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③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중 적재량 2톤 미만 자동차 ④「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 ⑤「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⑥ 조례 공포 전「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2020년 11월 30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 2.「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4. 시장이 정한 방법·절차 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②「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을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쇄”를 “폐쇄 또는 이용제한”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제1항 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의 제목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을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를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해차량”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을 “(운행제한 대상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1호의”를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를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운행제한”을 “제5조에 따른 운행제한”으로,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을 준용한다”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하며,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운행제한”을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행제한”을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제2항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령”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4. 시장이 정한 방법·절차 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시장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광역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필요하여 시장에게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른다. 1. (생 략) 2.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공사시간 변경·조정 3. (생 략) 4. 공공·행정기관 주차장 폐쇄 5.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 3. (현행과 같음) 4. ---------- 폐쇄 또는 이용제한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녹색교통지역을 제외한 시 지역을 말한다.	**제6조(운행제한 대상지역)**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
제7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제1항1호의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자동차로 한다. ② (생 략)	**제7조(운행제한 대상차량)** ①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운행제한 발령시간 및 절차는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을 준용한다. 〈신 설〉	**제8조(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른 운행제한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 ②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하며,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시장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위반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9조(운행제한 대상 자동차의 단속)** ① ----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시장은 운행제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자동차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① -----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생 략) 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의 취약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 등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취약계층 등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행령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4. 시장이 정한 방법·절차 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